



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조합원에게는 산림경영에 관한 임업기술보급 및 산림사업을 대신 경영하여 드리는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조합원 가입 안내

조합원 가입시 혜택

- · 의결권, 선거권 등을 통하여 조합운영에 직접참여
- ·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사업(나무심기, 숲가꾸기 등)을 하고자 할 때 조합에서 대리경영 가능
- · 조합에서 당기순이익 발생시 매년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 배당 및 출자죄수에 의한 출자배당 실시
- ·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
- · 예금은 3천만원까지 14%의 이자소득세 감면
- ·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경제사업자금 지원
- · 조합의 각종 시설물 우선 사용 가능

- ·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제출
- · 구비서류: 주민등록증, 임야대장 또는 임업경영내용 증빙서류
- · 출자금 납부: 1좌이상 (1좌: 5천원, 최대 10,000좌)
- ※ 조합원 가입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가입코자하는 지역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조합원 가입자격 (산림조합법 제 18조)

- ·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
- ·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
- · 임업인의 범위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
- · 1년중 90일 이상 임업종사자
- ·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
- ·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
- ·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 재배자(300m² 이상)
- · 대추(1천m²), 호도(1천m²), 감(1천m²), 밤(5천m²), 잣(1만m²), 표고자목(20m³)이상 재배자 등



※ 표고자목(20㎡)을 톱밥배지로 환산한 경우: 330㎡ 규모의 재배사 1동을 갖추고 1.3~1.5kg 톱밥배지 1만봉 이상을 재배하는 경우

대표전화 02)3434-8300 www.nfcf.or.kr